

경기도체조협회  
리듬체조 경기운영규정

2023. 12. 28.



경기도체조협회



Gyeonggi-do Gymnastics Associaton

제정 2023. 12.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2조 1항과, 제4조 5항, 제7장 제37조 1항에 근거하여 리듬체조의 저변을 확대하고, 리듬체조의 경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기운영을 통해 개인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대회 적용)** 본 규정은 경기도 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이 된다.

**제3조(임무)** 리듬체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리듬체조 분과 위원회가 대회 임무를 준수하고, 본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1. 리듬체조 위원회(위원장1,부위원장1,위원5-6)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대회 진행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에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경기시설 : 경기장은 참가선수들 규모에 따라 알맞아야 한다. 각 경기장은 규정에 맞는 매트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기운영에 필요한 마이크 설치, 음향장비, 영상촬영 등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수구점검 :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수구를 채점규칙에 맞는 지 검사 받아야 한다.(검사시 필요한 통제구역과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 예외사항이 될 수 있음.

4. 경기장 접근 금지 : 심판, 선수와 인증 받은 코치, 지역그룹 리더, 심판보조요원, 경기도 체조협회 임원, 의료요원, 시설요원 외에는 경기장 및 심판석 부근에 접근할 수 없다.

5. 관중 관리: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관중은 지정석에서만 관전해야 하고, 사진기 플래쉬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허가 되지 않는 상업적 촬영은 불허한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제4조(출전 규정)** 단일학교(클럽) 소속의 선수로, 개인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협회에 등록 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이 경우 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된 클럽에 한한다.)

1. 팀경기는 총 10개의 연기(후프 2 / 볼 2 / 곤봉 3 / 리본 3) 중 상위 8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① 한 팀(3~4명)의 선수는 1~4 종목의 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팀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개인종합경기와 종목별 결승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팀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개인 선수도 개인종합경기와 종목별 결승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 개인경기(팀경기)에서 등록된 명단으로 시기 추첨 이후 최종 등록이 발표되면 그 어떤 선수도 추가될 수 없다.

① 그러나 선수부상 및 개인사정으로 출전이 어려울 땐 경기시작 2시간 전 위원회에 신고하고 승락을 받은 후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출전 선수의 인 증은 반납되고, 그 대신 다른 선수가 인 증을 받는다.)

② 대회 참가신청서는 협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 초등학교 경기는 초등학교 경기규정에 따른다.

3. 경기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운영은 대회성격에 따라 대한체조협회에 규정을 참고하되, 경기도 체조협회 리듬체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경기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 대회 진행 일정에 따라 한번의 경기로 순위를 모두 결정할 수도 있다.

### 제5조(시기순 추첨)

1. 시기순 추첨은 위원회에서 선수들의 경기 출전 순서를 결정한다.

2. 추첨은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협회직원이 간사를 맡으며 추첨한 내용을 공고 발표한다.

제6조(동률 처리기준) 경기 결과에서 동률이 나온 경우는 FIG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제체조연맹 및 리듬체조 심판운영매뉴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점수 발표 직후 또는 1분 이내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구두 이의제기 이후 4분 이내에 서면(지정양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시 공탁금 및 심의는 리듬체조 심판운영매뉴얼을 따른다.

③ 이의신청은 소속팀 코치에 의해 해당 소속선수의 난도(D)점수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소속팀에 통보하고 경기장내 방송을 통하여 공

지한다.

**제8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 발생시는 현장에서 위원회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9조(복장 및 메이크업)** 경기 복장 및 메이크업 규정은 국제체조연맹(FIG)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22.0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전규정) ‘스포츠클럽등록’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9조(복장 및 메이크업)의 신설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 리듬체조 초등학교 경기규정

### 1. 초등학교 개인경기 개요

- ① 초등학교의 개인경기는 학년별 경기로 진행한다.
- ② 초등학교 개인경기는 대한체조협회 선수등록을 필한자로 3학년부터 참가 가능하다.
- ③ 초등학교 개인경기 종목에 맨손자유종목을 추가한다.
- ④ 학년별 세부종목 : 3,4학년 (맨손 + 4가지 수구 중 최대 택 2)  
5,6학년 (FIG 종목 / 맨손+ 4가지 수구 중 최대 택1이상 가능)

학년별 세부 참가 종목표						
학년	맨손자유	후프	볼	근봉	리본	비고
3	선택	최대 택 2				종목별경기
4		최대 택 2				
5		FIG 주니어 종목				종목별 경기
6		FIG 주니어 종목				

### 2. 3,4학년 경기

- ① 맨손종목 + 최대 수구 2종목을 선택한다.
- ② 종목별 경기만 실시한다(개인종합 경기는 실시하지 않음)
- ③ 시상은 각 학년별(3,4학년)로 종목별 8위까지 시상한다.

### 3. 5,6학년 경기

- ① 개인종합경기는 해당년도 FIG 개인종목 4개의 합산점수로 개인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 ② 개인종합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도 맨손종목+ 종목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시상은 각 학년별(5,6학년)로 개인종합과 각 종목별로 8위까지 시상한다.

### 4. 팀경기

- ① 각 팀별로 3-4명의 선수(3,4,5,6학년)가 참여하여, 총 10개의 연기 중 (후프 2 / 볼 2 / 곤봉 3 / 리본 3) 상위 8개의 점수를 합산한다.
- ② 팀경기는 6위까지 시상한다.

### 5. 단체경기 (3~6학년) - 단일팀 및 연합팀

- ① 각 단체는 5-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단, 1종목 출전하는 단체는 5명의 선수만 출전 가능하다.)
- ② 각 단체는FIG 주니어 규정에 따라 최대 2종목 까지 출전할 수 있다.
- ③ 단체종합은 두 종목 모두 참여한 팀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 ④ 각 종목별로 8위 (각 단체당 5명의 선수)까지 시상한다.
- ⑤ 단체종합은 6위까지 시상한다.(각 단체당 5명~6명의 선수)

\* 단체종합경기과 단체종목별 경기는 대회 진행 일정에 따라 한번의 경기로 순위를 모두 결정할 수도 있다.

## <리듬체조 개인맨손종목 채점 기준표>

□ 경기도 리듬체조 맨손종목 채점기준은 대한체조협회 채점기준을 적용한다.

### 개인맨손종목 채점 기준 (2022.05.14. 개정)

- ① 신체난도의 최대 개수는 9개 (점프/립, 발란스, 회전난도에서 최소1개씩)
- ② 최대 9개 신체난도 중 최소 2개의 반대발 난도가 요구된다.  
(결여시 매번 0.30감점)
- ③ 최소 2개의 댄스스텝 콤비네이션이 요구 된다. (결여시 매번 0.50감점)
- ④ 결합난도는 최대 1개만 허용된다.
- ⑤ 서로다른 신체 웨이브(W) 2개 결여시 매번 0.30 감점한다.
- ⑥ 난도심판은 4명이 배정되며 중간2개 점수의 평균을 낸다.
- ⑦ 예술 및 실시는 FIG 채점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⑧ 그 외의 규정은 FIG 규정을 적용한다.

○ 2022년도 제4차 리듬체조 심판위원회(2022.05.14.) 개정

# 2023년도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규정(리듬체조)

## 1.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에서 초등, 중등 각각 상위 입상자 2명(초등2, 중등2)을 선발한다. (개인종합순위합산)  
만약, 상위순위가 대회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가 출전한다. 부득이한 경우 선발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임의 선발한다.

## 2.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에서 고등부, 대학부(일반부) 각각 상위 입상자 2명(고등2, 대학/일반 2)을 선발한다.  
만약, 상위순위가 대회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가 출전한다. 부득이한 경우 선발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임의 선발한다.  
(개인종합순위합산)

## 3. 경기도 대표 지도자(각종대회, 각종캠프, 전지훈련, 기타등등..)는 경기도 체조협회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임의선발한다.

- 경기도 대표선수(각종 캠프, 전지훈련, 기타등등...)는 경기도 체조협회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임의선발한다.

## ※ 경기도체육회 규정

- 기록경기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목별 채점 방법에 의거하여 점수획득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기준기록 적용은 참가 신청일까지의 기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경기도체조협회 리듬체조위원회 규정

2023.12.20. 전면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체조협회(이하 “협회” 라한다) 조직에 근거하며, 경기도 체조협회에 가입한 리듬체조 위원회 조직 및 운영과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 체조협회 리듬체조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리듬체조 위원회는 리듬체조 종목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도자 및 꿈나무, 우수선수를 양성하여 경기도 리듬체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내외)

1.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회의 위원은 최소5명-최대8명 이내로 구성가능하다.

## 제3장 운영

1. 리듬체조는 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리듬체조 운영, 심판, 기타 관련사업등..)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리듬체조에 관련된 중요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경기도 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리듬체조대회 및 관련사업에 적극협조하며, 리듬체조 관련사업(대회, 전지훈련, 캠프, 기타등등....) 운영을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한다.(위원회 회의방법: 소집회의, ZOOM 회의, 특회의 )
5. 제 28조(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자진 사퇴를 할 경우, 재임은 불가하며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자격은 리듬체조 관련 종사자에 한한다.

#### 제4장 심판배정과 업무

※ 심판메뉴얼은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심판 매뉴얼을 참고하되, 필수사항을 일부 적용한다.

1. 심판배정은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국제/국내)로 배정한다.  
(위원장 이하 위원회 위원도 포함 )
2. 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대회에 대한 심판배정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한체조 협회 심판위원회에 의뢰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심판인원이 부족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최소 심판구성(기술, 예술, 실시)을 배정 할 수 있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심판은 각 시·도의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격 미충족자는 심판배정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조정할수 있으며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자(심화우선배정)를 배정한다.
5.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심판파견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추천대상자(심판업무 수행실적)

- 소년체전 : 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인 사람
  - 전국체전 : 시행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인 사람
6.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심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 국제심판, 1급 및 2급 심판을 배정할 수 도 있다.
  7. 최종점수가 전광판에 표출된 후에는 점수를 정정 할 수 없다. 단, 기계적 결함일 경우에는 해당 심판의 채점지를 확인 후 점수를 재표출하고 정정 안내방송을 한다.<신설 2022.3.23.>

#### 제5장 심판활동 및 관리

① 대회 참가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심판업무와 관련한 위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

- 나. 고의성 없는 실수에 의한 오심을 1차 경고 후 반복하여 오심을 한 사람
- 다. 전국체육(소년)대회에서 해당 시·도 심판이 해당 시·도 선수와 팀에게 심판들이 판정한 점수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점수를 부여한 사람
- ② 대회 참가 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 가. 관련규정에 의거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다른 심판의 점수를 수정한 경우
  - 나. 점수와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고의로 오심을 범했을 경우
  - 다. 심판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
  - 라. 경기 진행 중 심판의 품위를 훼손시키거나 욕설 및 폭력행위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
  - 마. 협회 관련 공문서에 대하여 열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열람한 경우
- ③ 심판과 관련된 상기 외의 별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 규정 및 채점규칙에 준하며,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6장 이의제기(소청)

제8조(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관련규정(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점수 발표 직후 또는 1분 이내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구두 이의제기 이후 4분 이내에 서면(지정양식)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 시 공탁금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납부방법은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개정 2021.09.13.> <개정 2022.1.18.>
- ③ 이의신청은 소속팀 코치에 의해 해당 소속선수의 난도(D)점수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는 공정평가심사단(심판위원장, 심판부위원장, 해당 종목이 아닌 상급 국제심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 중 최소 3인 이상 협의 후 결정한다.
- 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소속팀에 통보하고 경기장내 방송을 통하여 공지한다.

## 제7장 심판평가

제9조(심판평가) ①심판평가는 심판위원회규정 제19조에 의거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판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심판위원회에서 낸 평균 점수의 오차범위  $\pm 0.4$ 점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21.09.13>

1. 30% 이상: 구두경고

(예시) 채점 점수 10명 중 3명 이상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2. 40% 이상 : 차기 대회 쉐도우 심판 이수 또는 라인 심판 배정

3. 추후 동일인이 재발시에는 1회 심판배정에서 배제(국내/국제)

4. 편파판정은 비율과 상관없이 국내심판 배정 및 국제심판 파견을 배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5. 우수심판으로 평가된 심판은 체육회 및 협회 심판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장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 제11조(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① 소속 관계자가 심판에게 항의할 경우 1차시에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2차시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소속 관계자가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할 시에는 해당 경기의 최종점에서 0.50점 감점 및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소속 관계자와 관련하여 상기 외의 별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 규정 및 채점규칙에 준하며, 심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상기의 소속 관계자란 협회(체육회)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스템에서 등재된 대표, 단장, 주무,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 부 칙(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